



발행 : 2011 년 7 월

한국 IPG 사무국 (JETRO 서울사무소)

한국 IPG Information

목차

<한국 IPG 의 활동>

- 위조상품 유통근절 캠페인 1p
- 위조상품 오인구입 예방
팜플렛 제작/배포 2p
- 라운드테이블 개최 3~4p
- SJC 건의사항(지적재산분야)
제출에 관해 5p
- 지식재산보호 보급 및 계발
WEB 콘텐츠 소개 5~6p

<IP 를 알자>

- 한국 IP 뉴스 7p
- 「신·지재최전선은 지금」
캐릭터 비즈니스와 보호제도 8p

한국 IPG 멤버등록

http://renew.jetro-ipr.or.kr/info.asp?br_main=9

한국 IPG 는 일본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한국 IPG 사무국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지재팀

전화 / 02-3210-0195
e-mail / jetroiprseoul@gmail.com

岩谷一臣(이와타니·가즈오미)
菅 恩実 (조은실)
趙 乾東 (조건동)
池崎麻理絵(이케자키·마리에)

한국 IPG 의 활동

● 서울 명동에서 위조상품 유통근절 캠페인 개최 ~가짜상품의 폐해를 소비자에게 직접 알린다~



한국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과 공동으로 6 월 16 일 서울 명동 및 전국 광역시도 15 곳에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위조상품 유통근절 캠페인을 개최 하였습니다.

본 캠페인은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인 한국소비자 생활연구원에서 주관하고 특허청이 후원하는 행사로서 일반소비자와 기업인이 함께 참여 하는 계도형 가두 캠페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IPG 에서는 본 캠페인에 직접 참가하여 모방품 오인구입 팜플렛을 전국으로 3000 부 배포하였습니다.

동 팜플렛은 일본기업의 가짜제품을 소비자가 오인하여 구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각 일본기업의 지재담당자의 참여하에 작성되었으며, 한국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의 협력을 얻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7 월 6 일~8 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진짜가짜 비교 전시회 (한국관세청 주최) 에서도 동 팜플렛 1000 부를 배포하였으며, 최달룡 국제특허사무소의 최달룡소장이 강연을 맡은 '발명진흥을 위한 청소년발명교실 (가칭)' 에서 본 팜플렛의 배포를 희망하여 200 부를 송부하였습니다.

사무국 소식,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요? 이번에 한국 IPG 의 발족·활동추진에 전력해 주셨던 JETRO 지적재산팀의 榎本吉孝(에노모토 요시타카) 부소장이 본국으로 귀임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후임으로 임명된 岩谷一臣(이와타니 카즈오미) 부소장이 한국 IPG 를 담당하십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국 IPG ·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은 모두 본지와의 게재에 대해 권리자의 승낙을 받았습니 다. 무단재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여산은 철저한 품질 관리로 맛·색상·품질을 책임집니다

잠깐!
정품 확인하셨나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 인증 제품입니다

내용은 우선 한국 IPG가 팜플렛을 작성 / 배포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각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싶은 정품의 우수성과 구입경로, 대표상품의 이미지, 기업소개 등 관심을 갖기 어려운 내기 위해 스토리 텔링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 시키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38 **지식재산권** 제10호 2022년 4월 28일 발행

2



「부품소재분야에 있어서의 한국·지재전략 구축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 IPG에서는 6월 14일에 「부품소재 분야에 있어서의 한국·지재전략 구축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최:한국 IPG (SJC 지적재산위원회, JETRO 서울사무소). 후원 : 일본지적 재산협회(JIPA)). 부품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계기업 16 개사 (일본에서 9 개사가 참가)와 지적재산 전문가가 서울시내의 회의장에 모여, 재한일본대사관의 우山智哉(우야마토모치카)공사를 모신 가운데 총 29 명이 4 시간에 걸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본기업의 경쟁력과 국책으로 대항하는 한국

한국기업이 세계에서 높은 점유율을 획득한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등의 제품에는 기술력으로 앞서있는 일본기업의 부품과 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는 부품·소재 분야의 비중이 큼니다.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국책의 일환으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한 일본기업이 한국정부가 「부품소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과, 한국기업간의 계열화·수직 제휴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차세대의 소재산업 10 개 분야의 개발·육성을 목표로 구축한 「월드·프리미엄·마테리얼즈 사업단」의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 분야의 한국기업의 기술 개발력은 뛰어나며, 일본기업의 강점이었던 완제품 메이커와의 맞춤형(擦合せ型) 소재개발이 한국기업에 쉬프트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납입처인 한국기업으로의 기술정보 유출



과감한 기술개발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일본기업이 우세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1)개발한 기술정보의 본의 아닌 유출을 방지한다, (2)특허출원은 장래에 있을 분쟁을 대비해 용이하며 확실하게 권리행사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3)한국기업에 의한 모방품(대체기술)의 개발에 대항한 「공격적인 특허출원」도 시야에 포함한다, 와 같은 점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우선, 기술정보의 유출에 관해서는 부품소재의 압도적인 구매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이 일계기업의 영업담당과 기술자에게 기술정보의 개시를 강요하는 구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① 납입처에 샘플을 제공할 때, 「기밀유지계약 (NDA)」을 체결해주지 않음
 - ✧ 현지 영업은 스피드가 우선. NDA 를 요구하면 샘플평가에 응해주지 않아 곤란
 - ✧ 일본기업측에 편무 NDA 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② NDA 를 체결해도 샘플을 경쟁타사에 흘러 보내고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을 특정(인증)하기는 어려움
- ③ 압도적인 구매력을 배경으로 제품과 샘플의 상세 데이터 등의 기밀정보의 개시를 요구
- ④ 인재유출의 문제도 있으나, 실제적인 파악이 곤란

이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참가자가 제안한 것으로는 ▼NDA는 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교섭기록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송부한다, ▼샘플을 제공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해 두어 교섭기록에 「출원중」인 것을 명기한다, ▼현장의 영업담당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표간의 포괄적인 협의를 실시한다. 또한, ▼샘플이 흘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예를들어 한국에서 자사제품을 어느정도 어필할 수 있는지(샘플을 제작할 것인지 아닌지) 등, 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의 위험에 대해 자사의 상품과 기술에 랭크를 매겨 차별화 하는 전략을 구축해 두는 것도 제안되었으며, ▼정보의 개시에 관해서는 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와 상대방이 필요로하는 정보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품소재 기업은 이제는 「경쟁기업」

한국의 부품소재 기업이 캐치업 전략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일본의 경쟁기업에 대한 것과 같은 레벨의 대응이 지식재산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기업의 특허동향을 감시·분석하여, 그에 대항하기 위해 자사의 특허권을 적시에 획득하며, 상대방기업의 경합 특허출원을 방지하는 것이 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분쟁이 되었을 경우에 자사의 특허가 무효라고 하는 반격에 대비해 강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점(서포트 요건에 관한 한일간의 차이에 유의하며, 오역에도 주의한다)이 논의되었으며, ▼데드코피 제품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권리범위의 특허보다는, 좁아도 특허무효의 위험성이 적고 강력한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좋다는 등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술을 노하우로서 감출 경우에도, 예를들면 최종제품의 분석에서 파악되는 기술은 특허를 획득해 두는 등, 기술누출을 시야에 두고 특허출원전략을 구축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술수준이 중국에 비해 높고, 데드코피가 아닌 「모방기술」의 개발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의 특허심사에서는 특허등록이 안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모방레벨의 기술까지도 한국에서는 특허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참가기업에 소개되어, 이러한 모방기술에 대해 한국기업이 「자사기술」로 한국특허를 취득해 버리면, 일본기업이 한국 국내에서 경합하기는 어렵게 되므로, 비즈니스상의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된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국기업의 기술개발을 예측하여, 자사의 특허망을 구축해 두는 「공격적 특허출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에의 기대



간접침해 등의 한국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의 특허심사의 같고 다름과 한국의 판례경향 등도 고려해 상세하게 의논해 나가고 싶다는 것이 많은 참가자 여러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의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특정 산업분야의 일본기업이 모여, 특정 국가에 대해 안고 있는 지식재산의 국제적인 과제를 과감하게 분석하여, 대책으로서 지재전략을 구축한다, 라는 것이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의의였습니다.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 상대국정부에 개선을

요청하거나, 일본의 산업계가 계획하고 있는 지재전략의 구축과 지재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요망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개최에 있어 발표자로서 塩川信明(시오카와 노부아키)씨 (닛타), 伊藤寛(이토 히로시)씨 (미쯔이 화학), 濱野廣明(하마노 히로아키)씨 (세키스이 화학공업), 長谷川曉司(하세 가와쇼지)씨 (하세가와 지재전략컨설팅, 전 미쯔비시화학), 코디네이터로서 駒井慎二(코마이 신지)씨 (스미토모오사카 세멘트), 전문가로서 長谷川曉司(하세가와 쇼지) 변리사 (하세가와 지재전략컨설팅, 전 미쯔비시화학), 杉村純子(스기무라 준코) 변리사 (프로메테 국제특허사무소), 趙貴章(조귀장) 변호사, 朴普顯(박보현) 변리사 (김·장 법률사무소)의 여러분께서 개최당일은 물론 사전상의, 자료작성 등 많은 부분에서 협력해주셨습니다. 또한, 일본지적재산협회도 코디네이터의 선정·과연 등에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 알림

2011년도 건의사항(지적재산분야) 제출에 관해

S J C에서는 매년 한국정부 및 일본정부에 대해 사업환경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을 제출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올해도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및 요망사항을 수렴하여 정리 하고자 합니다. 지적재산분야에 관한 개선요망, 문제제기, 의견 등 폭넓은 요망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환경개선 요망 등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양케이트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양케이트 양식을 다운받아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법령 등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범위내에서 작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양케이트 양식: <http://www.jetro-ipr.or.kr/>

메인 화면 오른쪽 아랫부분의 알림란 「お知らせ」을 보시면 링크되어 있습니다.

- 양케이트 접수처: 제트로 서울사무소 지재팀 이와타니 가즈오미 (岩谷一臣)

e-mail Kazuomi_Iwatani@jetro.go.jp

● 마감: 9 월 30 일(금)

- 건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 확인을 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부탁드릴 수도 있습니다.

- 접수된 양케이트 중에서 SJC 지적재산위원회가 정리 및 검토하여 건의사항으로 정리한 후 제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작년 SJC 건의사항 및 한국정부측의 답변은 아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JC 홈페이지 <http://www.sjchp.co.kr/>

(메인화면 → S J C란 → S J C 자료실、S J C 건의사항의 「3. 지적재산권분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바랍니다.

지식재산보호 보급계발 WEB 컨텐츠의 소개

JETRO에서는 해외 진출을 예정하고 있거나 이미 해외로 진출 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방품/해적판 문제의 실태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소개하는 WEB 컨텐츠(만화형식:약 15 분)를 제작하여, 5 월부터 JETRO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에 있어서, 현재 모방품의 유통/피해가 가장 심각한 중국을 예로 들어, 상표권에 대한 테마로 제작하였습니다. 상표권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한 미연방지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 전략 수립 시 가이드로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http://www.jetro.go.jp/theme/ip/animation/>

- 제목: 「해외 짝퉁대책 입문편 ~ 중국에 있어서의 모방품/상표선취(商標先駆け)등록문제 대책 ~」

- 내용:

- | | |
|----------------------|---------------------------|
| (1 장) 짝퉁상품에 주의! | (6 장) 모방품에 대한 대책 |
| (2 장) 짝퉁상품의 실례소개 | (7 장) 상표선취등록문제의 대책 |
| (3 장) 상표권은 선취필승! | (8 장) JETRO의 지식재산관련 보호서비스 |
| (4 장) 상표권 실례소개 | (9 장) 양케이트 |
| (5 장) 모방품 피해는 이렇게 무섭 | |

● <WEB 콘텐츠 시청방법>

- ① 지식재산과 페이지 (<http://www.jetro.go.jp/theme/ip/animation/>) 에 접속
- ② 「지금 바로 대책을 확인」을 클릭해서 시작



- ③ 시청(전체:약15분) ※시청하고 싶은 장만 선택하여 시청하는 것도 가능.

● <제1장 짝퉁상품 요주의>



● <제6장 모방품에 대한 대책>



★그 밖의 기능 등

<조작 헬프 페이지>



<외부 링크 기능※>



※ 외부 링크 기능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5개 기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① 짝퉁 사진관(제2장 짝퉁상품의 실례소개)
- ② 모방품대책 매뉴얼, 판례사례집 등의 페이지(제6장 모방품에 대한 대책)
- ③ 침해조사비용의 조성(제6장)
- ④ 중국상표출원 상황 확인사이트와 상표검색의 일본어 매뉴얼(제6장)
- ⑤ JETRO의 지식재산보호 서비스(제8장 JETRO의 지식재산보호 서비스)



한국IP뉴스

● 지식재산기본법 한국 국회를 통과(5/1)

각 청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관련 정책을 통합하여 지식재산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육성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이 4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중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특허 등의 각종 지식재산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가며, 창출/보호/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19 개의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정책의 기획, 통괄, 심의/조정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직과 계획을 통해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은 물론, 지식재산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시스템을 준비할 계획이다. (주: 본법은 7/20에 시행됨)

● 성과를 올리는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5/16)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1 스페셜 201 조 보고서(2011 Special 301 Report)」에 의하면, 한국은 3년 연속으로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확실해 졌다. 지금까지 한국특허청은 지식재산분야에 있어서의 선진 5개국 특허청(IP5)으로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위조상품의 단속강화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작년 9월에 발족한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상표권위반 사건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 작년 1년간 위조상품 사건으로 60명을 형사 입건하였으며, 위조상품 3만여점을 압수하는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해외에 있어서의 특허분쟁에 대응가능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실시(5/18)

한국특허청은 중소기업 직원의 해외지식재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1년 해외지식재산전략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최근 스마트폰의 특허기술을 둘러싼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소송 등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해외특허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특허분쟁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특허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 육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비의 80%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등에 해외로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과 해외특허업무의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변리사정보를 한눈에, 변리사정보공개제도의 도입(5/24)

변리사 정보공개 및 연수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이 5월 24일에 개정되어, 2011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변리사 정보가 일반인에 공개되면,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임인 변리사를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변리사에 관한 정보 취득이 어려웠던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 다이와 가짜 골프클럽 수입업자를 서울세관이 적발(6/24)

서울관세청은 다이와 브랜드 「ZENIS」를 모방한 여성용 골프클럽 968 세트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판매하였다고 하여 상표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 한 것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의하면 모방품을 한국에 수입한 후, 다이와 브랜드의 신모델로 2008년 말부터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 브랜드를 위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짜 모델까지 제작/판매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하고 있다.

본건은 중국제의 표시를 지운 후, 정품 스티커를 「Made In China」 표시 위에 붙여, 일본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고 한다.

또한, 정품이라고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향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대해서는 『한국지식재산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URL : http://renew.jetro-ipr.or.kr/newsLetter_list.asp

캐릭터 비즈니스와 보호제도

File No.32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하여, 그 캐릭터를 부착한 각종 상품을 한국에서 전할 것을 기획하였다. 모방품이 나올 경우에 대비하여, 디자인권(일본의 의장권)과 상표권 등으로 자사의 권리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하지만, 캐릭터 자체로는 이런 권리를 등록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과 모양 등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인 상품을 특정하지 않으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캐릭터 비즈니스의 경우, 장래에 전할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는 미지수이어서,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워진다.



위의 예에서도 구체적인 상품(예를들면 의류)에 캐릭터를 적용한 형태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류로서 등록된 디자인은 다른 물품(예를들면 완구)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즉 물품이 다르면 법률상으로는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귀사가 멋진 캐릭터를 개발하여 완구, 의류, 주스, 가방, 우산, 문방구, 악세사리 등으로 상품화할 생각이라면, 개별 상품별로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디자인등록의 출원서류에 보호받고자 하는 물품의 명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로고와 그래픽심볼, 캐릭터 자체는 「물품」과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디자인의 권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한해 적용됩니다. 현행법에서는 각 디자인 권리가 약하고(보호범위가 좁고), 복수의 권리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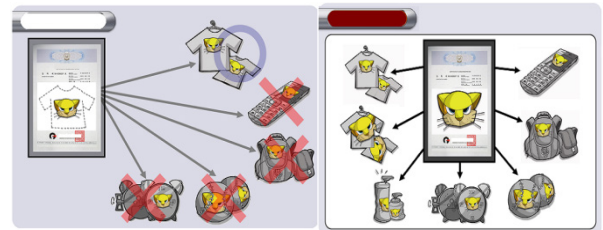
■ 최첨단 디자인보호제도의 도입

이런 상황은 가까운 미래에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미 디자인보호법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품과 연관시키는 현행의 법제도에서 탈피하여 물품과의 연관성을 제외시키며,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한 로고와 그래픽심볼, 캐릭터 자체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며, 현행법에서는 보호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도 개정안에서는 보호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도 일반 수요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인상을 받는 모든 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품과 관계없이 유사한 디자인이면 권리가 미친다라는 새로운

디자인보호제도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자인권의 권리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됩니다. (현행은 「등록일로부터 15년」).



디자인권 보호범위의 변화 (한국특허청 자료)

개정안은 유럽공동체의 디자인보호체계를 많이 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디자인보호체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혁명적인 개정이라는 점에서 디자인의 유사개념과 디자인권의 권리범위가 지금까지와의 해석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려서, 침해소송 등의 실무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고 법적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디자인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 보호범위의 확대는 불가피하며, 디자인 보호범위가 확대되면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의 가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1개의 국제디자인 출원서로 협정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서 디자인보호를 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행 한국디자인의 물품분류에는 없는 단순한 로고, 그래픽심볼, 캐릭터 등을 디자인의 대상에 포함시킨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이 올해 4월17일 한국에서 발효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에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7월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디자인권의 보호범위가 좁기 때문에 매력있는 캐릭터를 개발해도 디자인등록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위 개정안이 확정되어 시행되면 캐릭터의 상표등록 뿐만 아니라, 디자인등록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해설자>

특허법인신성 최중식 변리사

1961년생. 1995년의 제32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석사과정(법학석사). 한국특허청의 의장법개정위원 및 의장정책자문위원을 역임

1999년부터 특허법인신성에서 상표/의장/저작권 분야를 담당.

(감수 : 일본무역진흥기구 제트로 서울사무소 부소장 에노모토 요시타카)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연재>>

